

# 운영관리규정

계리사회 내규 제 2 호  
제 정 1991. 08. 26.  
최근개정 2024. 02 .2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업무처리는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 ① 본회는 효율적인 회 운영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 사무처 외에 원, 본부, 단 등의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에서 정한 특별기구에는 계리실무기준 등을 제·개정하는 계리실무기준원을 포함한다. <신설 2024.02.27.>

## 제 2 장 위 원 회

**제4조(종류)** ① 본회 사업을 논의·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위원회
2. 윤리위원회
3. 계리실무기준위원회
4. 회원관리위원회
5. 재무위원회
6. 교육위원회
7. 보험회계위원회

8. 국제지원위원회
9. 프로페셔널위원회
10. 불런티어위원회
11. 시험위원회
12. 홍보위원회
13. 계리학연구위원회
14. 상품위원회
15. 리스크관리위원회
16. 가정관리위원회
17. 계리법인위원회
18. 일반보험위원회
19. 퇴직연금위원회

② 특별위원회는 특정 업무 등을 심의·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설치)** ① 제4조(종류)의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또는 특별기구 산하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4.02.27.>

② 제4조(종류) 2항의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설치 운영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폐지)** ①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폐지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것으로 본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설치목적의 달성
3. 설치근거의 실효

② 위원회가 폐지된 경우 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 전기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특별기구의 장(단, 계리실무기준원장은 제외), 감사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와 사무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개정 2024.02.27.>

② 기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 단, 계리실무기준위원회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2.27.>

1. 위원장 : 본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자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3. 간사 :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4. 위원 :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한 수의 위원을 둔다.
  5. 자문위원 : 위원장은 회원이 아닌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③ 윤리위원회는 정관 10조(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회장은 제4조(종류)의 위원회 이외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 6인 이내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 후 제2차년도의 정기총회 종료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2.27.>

**제9조(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기타 위원장이 유고 또는 공석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의안이 심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준비, 소집통보,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처리업무를 한다.

**제10조(소집)** ①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일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등)**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당사업년도 개시 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결과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재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의안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 절 집행위원회

**제14조(목적)** 집행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및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역할)**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심의
2. 정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관계기관의 자문에 대한 답신 및 당해 기관 등에 대한 정책 건의
3. 본회 사업 추진 및 현안과제에 관한 심의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2절 윤리위원회

**제16조(목적)**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신용 및 명예 확보, 공공성 및 성실성 유지, 보험계리 관련 법규 준수, 본회 규정 준수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역할)** 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2. 본회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제재
3. 회원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 제재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절 계리실무기준위원회**

**제18조(목적)** 계리실무기준위원회는 계리업무 관련 계리실무기준을 제시하고 회원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역할)** 계리실무기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2.27.>

1. 한국계리실무기준(KSAP)의 채택
2. 계리실무 관련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의 채택
3. 계리실무 적합성 판단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절 회원관리위원회**

**제19조(목적)** 회원관리위원회는 회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역할)** 회원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에 관한 기준 관리
2. 정관, 위원회관리규정 등 제규정 관리
3. 회원 참여 행사(심포지엄, 세미나 등) 관리 및 실행
4. 회원관리 채널(홈페이지, SNS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절 재무위원회**

**제19조(목적)** 재무위원회는 본회의 자산운용, 예산 및 회비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무 관리 통한 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역할)** 재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예산의 적정성 검토
2. 본회 자산의 운용 및 관리
3. 회원들의 회비관리, 미납회비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4. 본회 운영경비 확충방안 검토
5. 예산집행의 적정성 분석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절 교육위원회

**제21조(목적)**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통한 회원의 전문성 강화, 자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역할)**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리사의 전문지식·기능에 관한 교육·연수
2. 회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및 교육 관리
3. 회원 보수교육과정 운용
4. 계리사 시험관련 교육과정 운영
5. 상시 교육 시스템 운용방안 마련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절 보험회계위원회

**제23조(목적)** 보험회계위원회는 보험사 재무보고 관련 계리적 관점을 제시하고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역할)** 보험회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의견 제시
2. 보험회계 관련 현안 과제 검토 및 보고
3. 보험회계 관련 실무사례 작성 및 회원 교육
4. IFRS17 업무 관련 품질 제고 활동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절 국제지원위원회

**제25조(목적)** 국제지원위원회는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회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역할)** 국제지원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보험계리사회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2. IAA, AAC 등 국제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3. 해외 계리사의 역할 및 활동분야 조사
4. 해외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절 프로페셔널위원회

**제27조(목적)** 프로페셔널위원회는 계리사 정의, 제도, 역할, 윤리 등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역할)** 프로페셔널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리사에 관한 기준의 제정과 조사 연구
2. 계리사의 위상제고, 역할 확대 등 계리사 관련 제도 개선
3. 계리사 관련 제도변경사항 주기적 확인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절 블런티어위원회

**제29조(목적)** 블런티어위원회는 회원의 Volunteer 참여 확대와 관련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역할)** 블런티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Volunteer 참여 회원 관리
2. Volunteer Credit 관리
3. 회원 Volunteer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4. Volunteer 관련 규정 관리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절 시험위원회

**제31조(목적)** 시험위원회는 계리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 자격 요건을 정의하며, 이를 통하여 계리사 지원자의 학습 지향점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역할)** 시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리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의 정의
2. 계리사가 시험에 출제될 범위에 대한 제안
3. 계리사 지원자들에 대한 학습자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해외 시험제도 및 동향 조사
5. 국내 시험제도 개선 지원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절 홍보위원회

**제31조(목적)** 홍보위원회는 본회 및 계리사 홍보를 통한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역할)** 홍보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및 계리사 대내·외 홍보
2. 뉴스레터 편집 및 발간
3. 회원 설문조사 관리 및 실행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절 계리학연구위원회

**제33조(목적)** 계리학연구위원회는 회원의 보험계리 관련 지식 함양과 보험산업 및 보험계리에 관련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역할)** 계리학연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학술세미나 개최
2. 계리연구지원제도 운영
3. 계리 분야 연구 및 조사 결과의 발표
4. 회보 등의 간행물 발행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절 상품위원회**

**제35조(목적)** 상품위원회는 보험사 상품개발 관련 계리적 관점을 제시하고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역할)** 상품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 상품 제도 관련 의견 제시
2. 보험 상품 관련 현안과제 검토 및 보고
3. 보험 상품의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사례 작성 및 회원 교육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절 리스크관리위원회**

**제37조(목적)**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보험사 위험관리 관련 계리적 관점을 제시하고 전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역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ICS 관련 의견 제시
2. 리스크관리 관련 현안과제 검토 및 보고
3. 리스크 관련 실무사례 작성 및 회원 교육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절 가정관리위원회**

**제39조(목적)** 가정관리위원회는 미래현금흐름 가정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실무 기준과 통제 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역할)** 가정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관련 실무기준 및 통제절차 마련
2. 보험사 가정관리 관련 의견 제시
3. 가정관리 관련 현안과제 검토 및 보고
4. 가정관리 관련 실무사례 작성 및 회원 교육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절 계리법인위원회**

**제41조(목적)** 계리법인위원회는 계리법인의 보험계리업무 수준 향상 및 계리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선진 계리법인으로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역할)** 계리법인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 업무역량 확대 및 용역서비스 Quality 개선
2. 계리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강구
3. 선진 계리업무 수행자질 향상
4. 선진 계리컨설팅사의 역할 및 활동분야 조사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절 일반보험위원회**

**제43조(목적)** 일반보험위원회는 일반손해보험의 선진화 및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역할)** 일반보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손해보험 법규 및 규정 개선
2. 일반손해보험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선진화 방안 조사·연구
3. 일반손해보험 현안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절 퇴직연금위원회**

**제45조(목적)** 퇴직연금위원회는 연금계리 관련 제도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목

적으로 한다.

**제46조(역할)** 퇴직연금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진 연금계리에 업무기준 조사 연구
2. 국내 연금계리 관련 현안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3. 연금계리 관련 업무기준 작성
4. 연금계리사제도 정착 발전 지원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절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제47조(목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본회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 임원, 위원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역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임원, 위원장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3. 임원, 위원장 등 후보군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3 장 사무처 등

**제49조(구성)** ① 사무처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사무처장 및 상근직원으로 운영한다.

② 사무처는 본회의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대외협력, 회원교육, 위원회업무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의 일반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50조(업무)** 사무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위원회 및 특별기구 등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3.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업무

4. 본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업무
5. 회원명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회비납부, 기부금 등 기타수익의 관리
7. 직원의 인사, 복무 및 급여의 관리
8. 문서의 수발, 보관 및 직인 관리
9. 기타 본회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제 4 장 특별기구

**제51조(목적 및 종류)** 특별기구는 본회의 핵심 사업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서 계리실무기준원, 계리연수원, 계리연구원, 회원관리본부, 국제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설치)** ① 제51조의 특별기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산하에 설치 운영한다.

② 특별기구를 설치한 경우 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폐지)** ① 특별기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폐지된다.

② 특별기구가 폐지된 경우 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구성)** ① 특별기구의 장은 본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선임한다. 단, 계리실무기준원장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02.27.>

② 특별기구는 소관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각 특별기구의 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리실무기준원 : 계리실무기준위원회 <개정 2024.02.27.>
2. 계리연수원 : 교육위원회, 시험위원회, 프로페셔널위원회
3. 계리연구원 : 계리학연구위원회
4. 회원관리본부 : 회원관리위원회, 홍보위원회, 윤리위원회
5. 국제협력단 : 국제지원위원회

③ 계리실무기준원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1/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02.27.>

④ 계리실무기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계리실무기준원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4.02.27.>

⑤ 계리실무기준원은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반 예산 계정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산하에 상근 전담인력을 둔다. <신설 2024.02.27.>

**제55조(특별기구 장의 직무)** ① 특별기구의 장은 소관 위원회의 사업을 총괄 운영한다. <개정 2024.02.27.>

② 기타 특별기구의 장이 유고 또는 공석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준용규정)** 기타 특별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02.27.>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1994년 6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1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14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15년 9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